

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구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규정’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4) 법제처 심사 전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부”를 “원부(原簿)”로 한다.

제4조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보수(補修)교육을 받았음”으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의4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18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의장(意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를 “3년”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마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3 중 마산항 도선구의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통영항 도선구를 삭제한다.

마산항 도선구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박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목섬, 씨앗섬, 신수도북단, 신수도남단,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 울포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및 비진도 섯품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	---

별표 4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마산항 도선구. 다만, 비진도 선평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은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삼천포항 수역은 선박규모에 관계없이 남동발전부두, 고성하이발전부두, 신항 4번 및 5번 선석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하며,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한다.
가. 마산항 및 진해항 수역은 해당 항만의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나. 고현항 수역은 사두도 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다. 옥포항 수역은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라. 지세포항 수역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150,000원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면접)	100,000원
3. 도선사 시험	1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 원부 (原簿)-----.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 ----- 발급해야 -----.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생략)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출해야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수습) ① ~ ③ (생략)	제7조(실무수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u>등재하여야 한다.</u>	④ ----- <u>등재해야</u>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u>하여야 한다.</u>	⑤ ----- <u>해야</u> -----.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 <u>제출해야</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u>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u>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u>보수(補修)교육을 받았음</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생략)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④ ----- <u>제출해야</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지정서의 반납)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u>자 또는</u>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u>자는</u> 지체 없이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제9조의4(지정서의 반납) ----- <u>사람 또는</u> ----- <u>사람은</u> -----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 ----- -----.
제10조(신체검사) ① (생략)	제10조(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u>하여</u> 한다.	② ----- ----- ----- <u>해야</u> -----.
제14조(응시원서) ① (생략)	제14조(응시원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 ③ (생략)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 ----- ----- ----- ----- <u>않은</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⑥ ----- ----- ----- ----- <u>않은</u> -----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⑦ ----- ----- ----- ----- -----

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
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

제출해야

⑧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

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3조(도선훈련) ①·② (생략)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중 에이치 기류(H 깃발)에 따른다.

② 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나 흠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제출해야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도선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급해야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을 위한 국제협약」-----

②

